삼 척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 보

선람	기 관 의 장

제959호 2017. 3. 10.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규 칙

○ 삼척시 규칙 제519호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발행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2
○ 삼척시 규칙 제520호 삼척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 ---------- 11
○ 삼척시 규칙 제521호 삼척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 12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19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 36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170호 어업권포기 및 어업면허 처분 공고 ---------- 39
○ 삼척시 공고 제184호 삼척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40
○ 삼척시 공고 제186호 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 재정 조례안 입법예고 ---------- 51
○ 삼척시 공고 제189호 공인 재등록 및 폐기 공고 ---------- 61
○ 삼척시 근덕면 공고 제2호 도로의 지정·공고 ---------- 62

공람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2017년 제1회 삼척시 조례·규칙 심의회(2017. 02. 22.)에서 의결된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발행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 척 시 장 김 양 호

2017년 3월 10일

삼척시 규칙 제519호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발행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판매대금을 입금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판매대금 정산서를 제출한다"를 "상품권의 판매, 회수 등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가맹점의 지정 및 관리)"를 "(사용점의 지정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사용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의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점으로 지정한다.

②시장은 사용점에서 사용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별지 제7호의 상품권 사용점 관련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사용점의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가맹점"을 "사용점"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삼척사랑상품권 지정판매 계약서

제1조(총칙) 삼척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삼척시를"갑"이라 하고,"갑"으로부터 상품권 판매를 대행 받아 소비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하는 판매점 대표를 "을"이라 칭하고, "갑"으로부터 상품권을 직접 수령하여 타 판매점으로 교부하는 판매점을 "본점"이 라 칭하며, 그 외 판매점은 "지점"이라 칭한다

제2조(적용범위)

1. "을"은 "갑"과의 계약에 따라 "갑"이 발행한 상품권을 대행 판매한다.
2. 본 계약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은 5,000원권, 10,000원권, 50,000원권 3종류로 권 면 기재된 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금액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판매금액) 삼척사랑상품권의 판매금액은 5,000원권은 5,000원, 10,000원권은 10,000원, 50,000원권은 50,000원으로 각 권종별 액면 금액으로 한다.

제4조(상품권의 교부) ①"갑"은 제작·발행한 상품권을 "을"의 본점으로 교부한다. 단, "을"이 요청한 경우에는 별도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을"의 본점은 지점별로 상품권 청구서에 의해 교부한다.

제5조(협조 및 의무) ① "을"은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상품권 인수 후에 발생하는 상품권 수량의 차이, 회수상품권의 분실 등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사용점으로부터 환전 지급 처리된 상품권에 대하여 천공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을"은 환전 지급 처리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별로 분류하여 회수일로부터 1년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은 1개월 이내에 "갑"에게 제출한다.

④ "갑"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경우, "을"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갑"은 "계약상대자"가 상품권 판매대행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상황 제출) "을"은 상품권의 판매, 회수 등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중도해지와 책임)

1. "갑"은 "을"이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을"과의 계약을 즉시 중도해지 할 수 있다.

2."을"이 계약을 중도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1개월 전에 그 의사를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여야한다.

3. 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도해지로 발생된 모든 손해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7조(계약내용변경 등) "갑"은 본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15일 전에 "을"에게 변경 내용을 통지하여야하며, "을"이 적용 예정일 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 내용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 시행한다.

제8조(효력발생시기 및 계약기간 등)

1.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상호 기명날인한 후 "갑"이 승인한 때부터 그 효 력이 발생한다.

2. 본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장계약에 있어 "갑"과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여야하며, 이러한 의사표시가 없을 시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본 계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9조(기타)

1.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년 월 일

(갑) 상품권 발행자
주 소 :
기 관 명 : 삼 척 시
대 표 자 : 삼 척 시 장 (인)

(을) 상품권 대행판매자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별지 제5호서식]

삼척사랑 상품권 청구서

권종	청구수량	금액	비 고
5,000원권			
10,000원권			
50,000원권			
합 계			

위 삼척사랑상품권을(금융기관명 : , 직위 : , 성명 :)직원 편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판매점(금융기관명) : (인)
담 당 자 :
금융기관명 삼척시삼척사랑상품권청구인 (인)

삼척사랑 상품권 청구서

권종	청구수량	금액	비 고
5,000원권			
10,000원권			
50,000원권			
합 계			

위 삼척사랑상품권을(금융기관명 : , 직위 : , 성명 :)직원 편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판매점(금융기관명) : (인)
담 당 자 :
금융기관명 삼척시삼척사랑상품권청구인 (인)

[별지 제6호서식]

삼척사랑상품권 사용점 ☐ 지정 ☐ 철회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 년 월 일	
	상 호 명	
	사업장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장) (휴대폰)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삼척사랑상품권 사용점으로 (지정 · 철회)받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삼척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 등록증 2. 신분증(담당자 확인)

[별지 제7호서식]

상품권 사용점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제4조 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가 2건 이상인 경우는 그중에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 한다.

2. 개별기준

행정처분 대상	행정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상품권소지자의 물건구매 등에 있어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이상 구매 후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만원 이하 100분의 80이상)	시정명령	6개월 계약해지	지정철회
(2)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시정명령	6개월 계약해지	지정철회
(3) 부정한 방법으로 환전을 한 경우 - 거래 및 물품을 제공하지 않고 바로 환전을 해주는 경우 등	3개월 계약해지	1년 계약해지	지정철회

[별지 제8호서식]

삼척사랑상품권 구매 신청서

(개인회원.법인회원 공용)

[상품권 구매 신청] *법인명(법인회원만 작성) :

상품권명	권종			계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삼척사랑상품권	매	매	매	매
	원	원	원	원

본인은 위와 같이 삼척사랑상품권 구입을 신청하며, 은행법상 구속성 상품 여부 판정에 따라 판매 거절 또는 판매일 이후 1개월 이내 본인 명의 또는 본인이 재직 중인 중소기업(본인이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등기임원인 경우)의 대출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내용을 이해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연락처 :)

*주민등록번호 앞7자리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귀중,

귀 행이 본인과의 삼척사랑상품권 판매 등 거래를 함에 있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행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상품권 판매 *상품권 판매의 은행법상 구속성 상품 여부 검증
수집·이용할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지, 전화번호), 금융거래정보 ( )내 여·수신 등 거래정보, 신용등급, 기타 상품권판매의 구속성 여부 검증 및 판매 기록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 종료일까지. 다만,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됨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위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상품권 판매가 가능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위와 같은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본 동의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며, 내용을 이해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별지 제9호서식]

삼척사랑상품권 대금 청구서

사용점 기재사항			
사용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연 락 처	
입금계좌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아래와 같이 삼척사랑상품권의 거래대금을 청구하오니 위 계좌로 입금 요청합니다.

20 . . .

사용점대표 : (서명 또는 인)

상품권 환전 요청내역			
권종	매수	금액	비 고
계			
오천원권			
일만원권			
오만원권			

【사용점 보관용】

상품권 환전 요청내역			
권종	매수	금액	비 고
계			
오천원권			
일만원권			
오만원권			

20 . . .

삼척사랑상품권판매점 (인)

2017년 제1회 삼척시 조례·규칙 심의회(2017. 02. 22.)에서 의결된 삼척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 척 시 장 김 양 호

2017년 3월 10일

삼척시 규칙 제520호

삼척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

삼척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7년 제1회 삼척시 조례·규칙 심의회(2017. 02. 22.)에서 의결된 삼척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 척 시 장 김 양 호

2017년 3월 10일

삼척시 규칙 제521호

삼척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삼척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

적 이익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4항 전단 중 "소속 기관의 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이에 상당하는"을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상담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보고하거나"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보고하거나"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을 "(금품등의 수수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시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제14조의3제3항 중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오락이라 함은"을 "오락이란"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를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제3항을 같은 조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제7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을 "공무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을 "(경조사의 통지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제17조제1항제2호 중 "직원에 대한 통지"를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통한 통지"를 "통하여 알리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회원에 대한 통지"를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중 "직무를 수행하면서"를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

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제20조의2 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그 반환 비용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21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인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2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

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 중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을 "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1~별표 3과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4조 관련)

구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10만원
3. 선물: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비고

가.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1호의 음식물과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하되, 제1호 또는 제3호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과 제2호의 경조사비를 함께 수수한 경우 및 제2호의 경조사비와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5조 관련)

1. 공무원의 사례금 상한액

구 분	4급 이상	5급 이하
상한액	30만원	20만원
1시간 초과(최대)	45만원	30만원

2. 적용기준

가.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공직자는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소속 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별표 3]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정계양정기준(제20조2항 관련)

비위 유형 \ 수수 행위 \ 금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등 수수의 경우	수 동	감봉·정직·강등	강등·해임·파면	해임·파면	파면
	능 동	정직·강등·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정직·강등·해임	해임·파면	파면	
	능 동	강등·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강등·해임·파면	파면		
	능 동	해임·파면	파면		

[별지 제1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소명 내용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보고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등 신고서

신고자	소 속			
	직 급(위)		성 명	
신 고 내 용				
일 시		장 소		
참석자				
비용부담				
사 유				
비 고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참석자 : 소속, 직책, 성명 기재
2. 비용부담 : 본인이부, 카드 사용여부 등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고 [ ] 기타( )		
요청인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		대표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인)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_____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_____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_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_____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생년월일	주소	

신 고 사 항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거래 상대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 (이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 ] 부동산 대여

대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대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직업 (소속)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 및 직위(직급)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명서류(시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삼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금품등 관리대장

일련번호	신고 접수번호	신고일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일	관리부서 (관리자)	보관장소	처리결과	처리일	비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 ] 방문 [ ] 전화 [ ] 기타( )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삼척시 고시 제2017 - 19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물등의 신축(말소) 등의 사유로 부여(폐지)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03. 10.

삼 척 시 장

○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251-104 외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 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7. 03. 1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월천리 422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251-104	20170310	건물신축	20090626	구7번국도연결 구간으로기존 도로명활용	
2	강원도 삼척시 교동 461	강원도 삼척시 새천년 도로 531-176 (교동)	20170310	건물신축	20090626	동지역해안도로 (기존도로명)	
3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이천리 43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이천1길 85	20170310	건물신축	20090626	일련번호방식 행정구역명사용 (옥원이천로분기)	
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214-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187	20170310	건물신축	20090626	구7번국도연결 구간으로기존 도로명활용	
5	강원도 삼척시 뒷나루길 287-61	폐지	20170310	건물말소	20090626	지역지명(후진) 옛명칭활용	
6		이	하	여	백		
7							
8							
9							
10							
11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계	도로명주소 5 전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월천리 422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251-104	20170310	건물신축	20090626	구7번국도연결구간으로기존도로명활용	
부여	2	강원도 삼척시 교동 461	강원도 삼척시 새천년도로 531-176 (교동)	20170310	건물신축	20090626	동지역해안도로(기존도로명)	
부여	3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이천리 43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이천1길 85	20170310	건물신축	20090626	일련번호방식행정구역명사용 (옥원이천로분기)	
부여	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214-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187	20170310	건물신축	20090626	구7번국도연결구간으로기존 도로명활용	
폐지	5	강원도 삼척시 뒷나루길 287-61	폐지	20170310	건물말소	20090626	지역지명(후진)옛명칭활용	

삼척시 공고 제2017 - 170호

어업권포기 및 어업면허 처분 공고

2016/2017년 삼척시 어장이용개발계획에 의한 어업권 포기 및 어업면허 처분사항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일

삼 척 시 장

□ 어업권 포기 및 어업면허 처분

어업의 명 칭	어업권 포기 및 처분현황				어장의 위 치	어업권자	비 고
	구분	면허번호	면허기간	면적			
복합 양식어업	포기	삼 척 제2005-11호	2005.09.23. 2017.02.26.	8.0	삼척시 원덕읍 갈남1리지선	2명대표 이★★ (김★★)	기간만료 재 개 발
	신규	삼 척 제2017-1호	2017.02.24. 2027.02.23.	8.0			

삼척시 공고 제2017 - 184호

「삼척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3월 8일

삼 척 시 장

삼척시 소셜네크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SNS를 활용한 시정 이해와 주민 참여를 높이고 원활한 소통공감 행정구현

○ SNS 서포터즈단 운영, 시정참여 이벤트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사항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1조 ~ 제5조)

○ 행사의 운영, 개인정보보호, SNS 서포터즈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6조 ~ 제12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삼척시장(참조:문화공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1) 주 소 : (우25914)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문화공보실

2) 전 화 : 033-570-3221

3) FAX : 033-570-3132

4. 참고사항

이 조례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삼척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 제출서식 1부. 끝.

【붙임 1】

삼척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 3. .
제 출 자 : 삼 척 시 장

1. 의결주문

삼척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SNS를 활용한 시정 이해와 주민 참여를 높이고 원활한 소통공감 행정구현

나. SNS 서포터즈단 운영, 시정참여 이벤트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사항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1조 ~ 제5조)

나. 행사의 운영, 개인정보보호, SNS 서포터즈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6조 ~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2

삼척시조례 제 호

삼척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기반으로 삼척시민 상호간의 소통을 통해 삼척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하 "SNS" 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소통민원" 이란 민원인의 권리·의무의 형성·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외의 방식으로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소통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소통민원창구" 란 시민과의 신속·편리한 의사소통을 위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전자민원창구와는 별도로 SNS 등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4. "콘텐츠" 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 "삼척 SNS 서포터즈" 란 삼척시장(이하 "시장" 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삼척시(이하 "시" 이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SNS 계정의 개설) ① 시장은 주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삼척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문화·예술·체육·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SNS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업체,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게시물의 관리) ① 시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 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제6조(각종 행사의 운영) ① 시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홍보, 시민 등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시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8조(SNS 서포터즈의 운영) ① 시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삼척 SNS 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

② SNS 서포터즈는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SNS 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의 평가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단 사임 등으로 위촉되는 서포터즈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SNS 서포터즈는 시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에 제공된 콘텐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은 서포터즈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포터즈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SNS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SNS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9조(SNS 서포터즈의 자격) SNS 서포터즈의 자격은 시정 홍보 및 시정발전에 관심이 많고, 취재 및 기사작성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사작성 및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 활용이 가능한 사람
2. 문예창작, 사진에 자질이 있거나, 관련학과를 전공한 사람
3. 신문, 잡지사의 기자 또는 원고 기고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SNS 홍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제10조(원고료 지급 등) ① 시장은 SNS 서포터즈의 취재원고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대외적으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 필요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유료시설의 요금감면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삼척 SNS 서포터즈에 위촉되어 활동 중인 사람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관광 유료시설에 대하여 요금 감면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SNS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시장은 SNS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서포터즈 또는 공무원에게는 「삼척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3조(소통민원창구의 운영) ① 시장은 SNS를 기반으로 소통민원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소통민원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개설한 SNS 계정을 활용하여 소통민원창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가 운영하는 SNS에 접수된 소통민원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정식민원 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관계법령 발췌서

공직선거법

[시행 2017.2.8.] [법률 제14556호, 2017.2.8.,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02-503-2190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4.3.12.>

1. 삭제 <2004.3.12.>
2. 삭제 <2004.3.12.>
3. 삭제 <2004.3.12.>
4. 삭제 <2004.3.12.>
5. 삭제 <2004.3.12.>
6. 삭제 <2004.3.12.>
7. 삭제 <2004.3.12.>
8. 삭제 <2004.3.12.>
9. 삭제 <2004.3.12.>
10. 삭제 <2004.3.12.>
11. 삭제 <2004.3.1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08.2.29., 2010.1.25., 2013.8.13.>

(1~3) : 생략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07호, 2016.3.29., 일부개정]

행정자치부(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4105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6.>

【별첨 2】

■ 삼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SNS 서포터즈 원고료 지급 등(연간소요액) : 41,550천원

SNS 서포터즈단	소요액	비고
30명	○ 원고료 - 100천원×30명×12월=36,000천원 ○ 실비보상(교육, 회의) - 80천원×30명×2회=4,800천원 ○ 관광지 감면 - 25천원×15명×2회=750천원 ※ 합계 : 41,550천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삼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4. 작성자

작성자	삼척시 문화공보실 실장 박 원 희
연락처	(033) 570-3221

【붙임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예고내용	삼척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 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예고내용	검토의견(의견 제출내용)			

삼척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삼 척 시 장 귀하

삼척시 공고 제2017-186호

「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삼척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8일

삼 척 시 장

「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립어린이집 위탁시 법률의 위임없이 수탁자 1명에게 1개소의 어린이집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였기 관련 조례를 삭제하고 「영유아보육법」제28조 제1항 개정으로 영유아 보육 보육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의 제한 삭제(조례 제19조)
나. 보육의 우선 제공(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참조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주소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우편번호 : 25914
전화 : 033-570-3768, FAX : 033-570-3138

4. 참고사항

이 조례안은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samcheok.go.kr) 고시·공고란 부분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관련법령 1부
3. 비용추계서 1부
4. 입법예고안 검토의견 제출서식 1부. 끝.

【붙임 1】

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 3. .
제 출 자 : 삼 척 시 장

1. 의결주문

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립어린이집 위탁시 법률의 위임없이 수탁자 1명에게 1개소의 어린이집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였기 관련 조례를 삭제하고 「영유아보육법」 제28조 제1항 개정으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의 제한 삭제(조례 제19조)
나. 보육의 우선 제공(안 제2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2

삼척시조례 제 호

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하고,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하며,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제25조 및 제26조로 하고, 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제27조 및 제28조로 하며,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로 한다.

제23조(종전의 제24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7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4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제26조 앞에 "제4장 비용 및 보조금"을 삭제한다.

제25조 앞에 "제4장 비용 및 보조금"을 삽입한다.

제28조 앞에 "제5장 지도 및 감독"을 삭제한다.

제27조 앞에 "제5장 지도 및 감독"을 삽입한다.

제30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29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삽입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위탁의 제한) 시장은 수탁자 1명에게 시의 관할 구역 안에서 2개 이상의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다.	<삭 제>
제20조 ~ 제23조 (생 략)	제19조 ~ 제22조 (현행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와 같음)
제24조(보육의 우선 제공) 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보육의 우선 제공)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6. (생 략)	5. (현행 제6호와 같음)
<신 설>	6.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5. (생 략)	7. (현행 제5호와 같음)
제25조 ~ 제31조 (생 략)	제24조 ~ 제30조 (현행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와 같음)
제4장 비용 및 보조금 제26조(생 략)	<삭 제>

<신 설>	제4장 비용 및 보조금 제25조(현행 제26조와 같음)
제5장 지도 및 감독 제28조(생략)	<삭 제>
<신 설>	제5장 지도 및 감독 제27조(현행 제28조와 같음)
제6장 보칙 제30조(생략)	<삭 제>
<신 설>	제6장 보칙 제29조(현행 제30조와 같음)
제32조 (생 략)	제31조 (현행 제32조와 같음)
[별지] 별표_삼척시 공립어린이집 명칭 및 위치(제12조 관련)	[별지] 별표_ 삼척시 공립어린이집 명칭 및 위치(제12조 관련) "붙임" 참조

〈별지〉

[별표]

삼척시 공립어린이집 명칭 및 위치(제12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고
도계어린이집	삼척시 도계읍 전두안길 15	
별나라어린이집	삼척시 봉황로 9-15(남양동)	
샛별어린이집	삼척시 원당로 4(원당동, 원당주공아파트 관리동 내)	
근덕어린이집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587	
하장어린이집	삼척시 하장면 하장길 36	
미로어린이집	삼척시 미로면 적병길 18	
건지어린이집	삼척시 엑스포로 174, 102동(건지동, 건지주공아파트)	
임원어린이집	삼척시 원덕읍 임원강변1길 13	
가곡분원어린이집	삼척시 가곡면 가곡천로 1479	

【붙임 2】

지방자치법

행정자치부(자치제도과) 02-2100-3814

제3장 조례와 규칙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6.8.4.] [법률 제14001호, 2016.2.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044-202-3541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09.10.9., 2010.1.18., 2011.6.7., 2013.8.13., 2016.2.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7.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②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삼척시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은순
연락처	(033) 570 - 3320

【붙임 4】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 · 규칙 제명 :

▣ 의견제출자 :

조 례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17-189호

공인 재등록 및 폐기 공고

삼척시공인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등록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삼 척 시 장

○ 등 록 사 유 : 2017. 3. 7. 마모에 의한 신조개각
○ 등록 연월일 : 2017. 3. 7.
○ 등록 공인명 및 인영

구분	공 인 명	규격	인 영	등록사유	비 고
재등록 공인	교동장인 (민원실인증기전용)	2.7㎝ * 2.7㎝ (정방형)		마모에 의한 신조개각	
폐기 공인	교동장인 (민원실인증기전용)	2.7㎝ * 2.7㎝ (정방형)			

삼척시 근덕면 공고 제2017-2호

도로의 지정·공고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887-10번지 상에 단독주택 용도 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하고자 합니다.

2017년 03월 일

삼 척 시 장

○ 도로의 위치 :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887-9
○ 도로의 현황 : 길이 : 39.15m, 너비 : 2.5m, 면적 : 178.0㎡
○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유자
			공부상 면 적	제 외 면 적	지 정 면 적	
근덕면 동막리	887-9	대	178	-	178	양**, 이**

■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2.12.12>

도 로 관 리 대 장

(2면 중 제1면)

지정번호		
대지위치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지번 887-10
건축주 이 *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19**년**월**일	허가(신고)번호 2017-근덕면-신축신고-5호
도로길이 39.15m	도로너비 2.5m	도로면적 178.00㎡
이해관계인동의서		

아래 부분을 「건축법」 제45조에 따른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합니다.
※ 지정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에 따른 도로로 인정됩니다.

관련지번	동의면적(㎡)	동의일자	토지소유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동막리 887-9	178	2017.02	망**, 이**		양**, 이**

작성자 : 직급 지방시설7급 성명 김 *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직급 지방시설6급 성명 박 * *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2면 중 제2면)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 척 <임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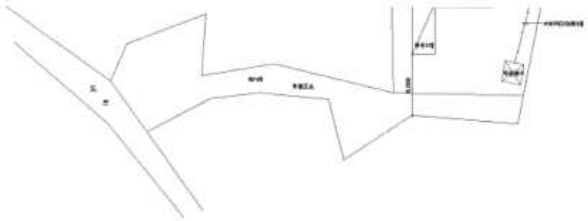

현황도 축 척 [ ] 1/600, [ ] 1/1,200